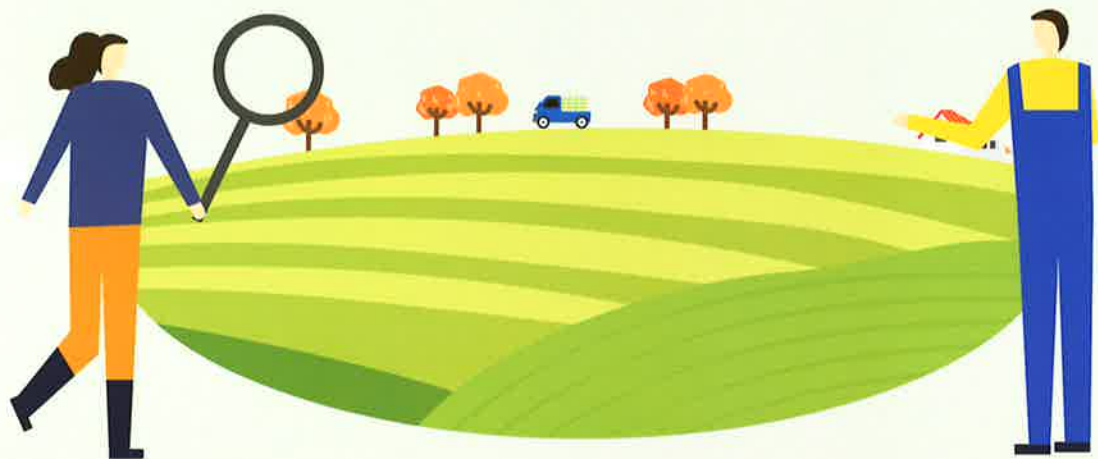


8월 18일부터 「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」 본격 시행

- 농지 임대차계약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-



신고시행일 2022년 8월 18일(목)

신고서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등

신고의무인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

신고방법 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(시·구·읍·면)

농지대장 변경신청 내용

신청 대상	신청자	시행일	첨부서류	비고
① 농지 임대차 사항 ▶ 임대차계약 체결·변경·해제 시	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	'22.8.18	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	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
② 농축산물생산시설 ▶ 농막, 축사, 고정식온실, 버섯재배사, 곤충사육사	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	'22.8.18	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 관리대장	
③ 토지의 개량시설 ▶ 수로, 제방	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	'22.8.18	서류, 사진, 도면자료 등	

* 2022년 8월 18일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설치를 완료한 시설은 변경신청 대상이 아님

제재사항

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에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(만원)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▶ 농지 임대차 및 시설설치 거짓 신고	법 제64조 제1항제2호	250	350	500
나. 법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▶ 농지 임대차 및 시설설치 미신고	법 제64조 제2항	100	200	300

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농지소재지 행정청(시/구/읍/면)에 문의 바랍니다.